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950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3

I. 개요

1. 안도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950호)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도결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2. 23.

(3) 회 부 일 : 2026. 2. 24.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자료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의 수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을 완화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등을 미제출한 경우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삭제 및 제25조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현 행	개 정 안
☐ 자료제출 요구 불응에 대한 벌금 처벌(제23조제4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3항1)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u>1천만원 이하의 벌금</u> <u><신 설></u> <u><신 설></u>	☐ 자료제출 요구 불응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제23조제4항 삭제 및 제25조 신설) <u><삭 제></u> ○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u>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u>(제25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징수(제25조제2항)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적용

* 안도결의원안 2026. 2. 23. 발의(의안번호 16950)

☐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행 벌금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 1) 「관세법」 제20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①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환급등의 신청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 매체에 의하여도 보관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자,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자,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정부에서는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이나 국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형벌 합리화 TF」(이하,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음.²⁾

TF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³⁾ 발표를 통해 대체로 생활밀착형인 국민의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형벌보다는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의 추진 방향을 강조함.

- TF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서는 세부내용으로 14개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대한 110개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포함된 재정경제부 소관의 관세환급특례법에 대한 개선안에 따라 본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임.⁴⁾

- 사업주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형사리스크를 완화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한편, 전과자 양산 우려가 있는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고자 하는 TF 개선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2) 재정경제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및 연구기관(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법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2025년 8월 1일 제1차 회의 개최 (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경제형벌 합리화 TF 본격 가동... 부처 경제형벌 30% 개선 추진」, 2025.8.1.)

3)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과잉형벌 견어내고, 민생경제 활력 높인다.」 및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2025.9.30.

4)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서 제시한 110개 개선안 중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소관에 속하는 개선안에 따라 발의된 관세 관련 법률안은 다음과 같음

개정안	발의자	의안번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	안도걸	22169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221709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2216998

□ 개정안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환급금의 정확성을 심사하기 위해 환급받은 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자에 대한 벌금 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준⁵⁾⁶⁾을 합리화한다는 점에서 역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참고로, 다른 관세 관련이나 그 외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 등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서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예시]

법률	제출의무 규정	위반 시 제재
관세법 ⁷⁾	법 집행 목적의 일반적인 서류 제출·보고 명령 (제263조) ⁸⁾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277조제3항) 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요구 (제16조) ¹⁰⁾	(거짓 제출) 2천만원 이하 벌금 (제44조제2항) ¹¹⁾ (기한내 미제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46조제1항) ¹²⁾
해양이용영향 평가법	협의의견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 (제28조) ¹³⁾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2조제3항) ¹⁴⁾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업 수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 (제60조) ¹⁵⁾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4조제2항) ¹⁶⁾

5) '자료·물건제출, 보고·출석·답변 등의 거부 또는 거짓 이행' 유형의 의무위반행위는 일반적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pp.809-810.

6) 대개 특정한 업무 집행과 직접 관련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감독 차원에서 요구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감독관청의 입장에서는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 차원의 보고의무 위반에도 형벌로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감독 차원의 보고의무는 보통 감독관청이 보고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감독관청은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차원의 보고의무 위반이 행정활동을 위태롭게 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6』 p.486.

7) 「관세법」은 2023년 개정으로 서류 제출·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되었는데, 본 개정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서류 제출·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관세법」과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8)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9)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12. 31.>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4.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 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8조(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등) ① 처분기관의 장은 면허등을 받은 사업자가 협의의견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전문가 또는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처분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의의견 이행을 확인할 때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2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 재정경제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차원에서 벌금의 과태료 전환에 대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동일 사항에 대해 형벌을 과태료 전환한 「관세법」 17)과의 정합성 도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만, 개정안은 형벌 완화 취지에 따라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있지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금액의 상한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이 존재함.
-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 금액으로 전환되도록 하고¹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의무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¹⁹⁾ 하는데, ① 동일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벌금 1천만원 상한이 과태료 5천만원 상한으로 증가하는 점, ② 앞의 ‘서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예시’ 표에서 보듯이 서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
 2. 제2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1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29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4. 제35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중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평가대행자
 5. 제35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한 평가대행자
 6. 제4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15) 「**환경영향평가법**」 제60조(보고·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16)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1호·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조사를 거부한 자
- 17) 서류의 제출·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5천만원 이하 과태료(§277③)
- 18)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6』, p.607.
- 19)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p.810.

준을 정하고 있는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상한액을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음.

□ 「관세법」은 2023년 개정을 통해 동 개정안과 같이 서류 제출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했는데, 당초 제출된 정부안²⁰⁾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었으나 해당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되는 위반행위²¹⁾ 중 하나인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기피 행위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²²⁾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²³⁾에 따라 5천만원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임.

□ 위반행위의 비난정도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세법」의 과태료 금액도 세분화하는 방향²⁴⁾으로 같이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 의안번호 2122348, 제안일자 2023.5.26.

21)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12. 31.>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4.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22) 「국세기본법」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348호)」, 2023.11., pp.4-5.

24) “다수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가 보호법익 침해의 중대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비난정도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을 세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p.810.

문 의 처
02)6788-5158